

공 시 송 달 공 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 및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6. 8. 4.

노 원 구 청 장



1. 공고내용 :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
2. 공고기간 : 2026. 8. 4. ~ 2026. 8. 18. [14일간]
3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공고대상 : 아래 내역 참조
5. 처분근거
 - －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
 - －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0조제1항
6. 유의사항
 - － 2026.8.18.(화)까지 원상회복 후 노원구청 푸른도시과(☎02-2116-3971)로 완료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, 미이행 시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 계고 및 실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 - － 또한,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0조의2,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불법행위 1차 시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 시 송 달 내 역

▣ 불법행위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보

연번	행위자	불 법 행 위						비고
		위 치	내 용	면 적(㎡)	구 조	용 도	행위년도	
1	미상	상계동 산29	불법형질변경	90	-	무단 경작	2026.6.	하천 계곡 단속
2	미상	상계동 산28	불법형질변경	80	-	무단 경작	2026.6.	하천 계곡 단속